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10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4월 24일

제안자 : 이범윤 의원외 4인

□ 수정이유

- 정기회 운영의 개최 횟수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문구 중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여 현실에 부합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안 제5조 제6항 중 “연 1회이상”을 “연 1회”로 함
- 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의 “별첨”을 “별표”로 하며 “센터이용료(안)”을 “센터이용료”로 함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6항 중 “연 1회이상”을 “연 1회”로 한다.

안 제8조 제1항 중 별표의 “별첨”을 “별표”로 하며 “센터이용료(안)”을
“센터이용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 - ⑤ (생략)</p> <p>⑥정기회의는 <u>연 1회이상</u> 개최하며,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<u><별 참></u> <u>센터 이용료(안) (표 생략)</u></p>	<p>제5조(운영위원회) ①- ⑤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⑥.....<u>연 1회</u>..... </p> <p>⑦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별 표></u> <u>센터 이용료(표 제정안과 같음)</u></p>